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②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용계약의 방법)

-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동일한 과정을 따르거나 별도의 동의서로 갈음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 등 제공서비스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기록·관리한다.
 - ③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④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고,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급 수납규정에 의한다.
- ②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대상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 ③ 월 이용료 부담액은 [붙임1]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5조 (계약해지)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 1.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2.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3.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4.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5.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6.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7.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8.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3. 「소득세법」 제59조의 4제 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4.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5. 급여제공범위와 직원의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수 있다.

6.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7.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방문요양/간호/목욕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2022년)

<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이용시간	1~5등급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방문당)	30분이상	15,430	2,315
	60분이상	22,380	3,357
	90분이상	30,170	4,526
	120분이상	38,390	5,759
	150분이상	44,770	6,716
	180분이상	50,400	7,560
	210분이상	56,170	8,426
	240분이상	61,950	9,293

구분	금액 (원)		
방문간호 (방문당)	15분~30분미만	30분~60분미만	60분 이상
	37,840	47,450	57,090

구분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방문목욕 (방문당)	78,580	70,850	44,240

<재가급여의 월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068,500	1,021,3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경감대상자			9% or 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